광천김 판례 관련 질의응답

안녕하세요. 한경훈입니다.

광천김 판례(2022허5690)와 관련한 추가 질의에 대하여, 이의제기 기간이 지났으므로 간략하게만 정리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만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원본은 데생 홈페이지에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경훈 드림.

제119조제1항제2호의 통상사용권자의 의미는?

1. "**자유롭게** 사용권을 **설정**"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2. "**설정**행위로 정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사용" (상표법 조문별 해설서)

제119조제1항제2호와 제119조제1항제7호의 관계는?

1. "정관 준수 사용"(동일범위 내 사용)은 추가 논의 필요
2. "정관 **위반** 사용"(유사범위 내 사용)은 제119조제1항제2호가 있음**에도** 제119조제1항제7호를 입법(법률 제7290호)

광천김 판례(2022허5690)의 사안은?

1. "정관 **위반** 사용"(유사범위 내 사용)에 해당 (**특허법원 2023. 11. 8. 선고 2022허5690 판결**)
2. 제119조제1항2호가 아닌 **제119조제1항7호(가)목**을 적용할 사안 (김병일 등,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등록요건·범위 확대 및 품질관리 방안", 특허청, 2024년, 288면.)

광천시골 판례(2022허6303)가 사용한 "사용권자" 표현은?

1. "G영어조합법인 및 사용권자인 그 조합원들" ⇒ **피고들** 주장 내용
2. "대상상표의 권리자 및 사용권자들" ⇒ "**2호**의 통상사용권자"X (법정사용권자로 사용권자로 지칭O)